

##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안내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 1) 운용역 변경

대상 펀드	부책임 운용역	
	변경전	변경후
KB 연금 성장주50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손경선	<u>이석호</u>
KB 연금 국내채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		
KB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		
KB 연금 국내외채권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채권)	손경선/연치상	<u>이석호</u> /연치상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sup>주1)</sup>	손경선/박준범	<u>이석호</u> /박준범
KB 연금 가치배당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sup>주2)</sup>	정용현/손경선	정용현/ <u>이석호</u>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 ※ 변경 운용역의 주요 경력은 아래 표 참고 주1) 은 클래스 추가 포함: 아래 2) 내용 참고 주2) 은 정기갱신 포함		

#### [ 운용역별 주요 경력 ]

운용역	주요 경력
이석호	유리자산운용 채권운용2본부 9년2개월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개월

※ KB자산운용([www.kbam.co.kr](http://www.kbam.co.kr)) 홈페이지(공지/공시→공시정보)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에서 해당 운용역의 과거 운용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 클래스 추가

##### -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b>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9. (생략)	<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b> ① ~ ② (좌동) ③ (좌동) 1. ~ 9. (좌동) <b>10.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                      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b>

		<p>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p> <p><u>11.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b>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b></p> <p>① (생략)</p> <p>1. ~ 9. (생략)</p> <p>② ~ ⑤ (생략)</p>	<p><b>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b></p> <p>① (좌동)</p> <p>1. ~ 9. (좌동)</p> <p><u>10.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1.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b>제39조(보수)</b></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 9. (생략)</p>	<p><b>제39조(보수)</b></p> <p>① ~ ② (좌동)</p> <p>③ (좌동)</p> <p>1. ~ 9. (좌동)</p> <p><u>10.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8</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0</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p><u>11.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3.8</u></p> <p><u>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6</u></p> <p><u>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3</u></p> <p><u>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u></p>
	<p><b>제40조(판매수수료)</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p>	<p><b>제40조(판매수수료)</b></p> <p>① (좌동)</p> <p>② (좌동)</p> <p>1. ~ 2. (좌동)</p> <p>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p>

	<p>집합투자증권,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4. (좌동)</p> <p>③ (좌동)</p>	<p>집합투자증권,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b>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b>: 해당사항 없음</p> <p>4. (좌동)</p> <p>③ (좌동)</p> <p><b>④판매회사는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b></p> <p><b>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b></p> <p><b>1.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b></p> <p><b>⑥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b></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생략)</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좌동)</p> <p>② (좌동)</p> <p>1. (좌동)</p> <p>2.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b>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b> : 해당사항 없음</p> <p>③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 KB스타 중국본토 CSI300 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b>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13. (생략)</p>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b>                      ① ~ ② (좌동)                      ③ (좌동)                      1. ~ 13. (좌동)  <b>14.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인터넷 등 전자                      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b></p>
	<p><b>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b>                      ① (생략)                      1. ~ 13. (생략)                      ② ~ ⑤ (생략)</p>	<p><b>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b>                      ① (좌동)                      1. ~ 13. (좌동)  <b>14.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b>                      ② ~ ⑤ (좌동)</p>
	<p><b>제39조(보수)</b>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 13. (생략)</p>	<p><b>제39조(보수)</b>                      ① ~ ② (좌동)                      ③ (좌동)                      1. ~ 13. (좌동)  <b>14.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b>  <b>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68</b>  <b>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0</b>  <b>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b>  <b>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b></p>
	<p><b>제40조(판매수수료)</b> ①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생략)                      1. (생략)                      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p>	<p><b>제40조(판매수수료)</b> ①판매회사는 <b>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E 클래스</b>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b>해당</b>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좌동)                      1. (좌동)  <b>2.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b>  <b>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b></p>

<p>당사항 없음</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2. (생략)</p> <p>⑤ 제2항 및 제4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p>	<p>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좌동)</p> <p>④ (좌동)</p> <p>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b>및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b>: 해당사항 없음</p> <p>2. (좌동)</p> <p>⑤ 제2항 및 제4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제1호 <b>내지 제2호</b> 및 제4항 제2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 ④ (생략)</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좌동)</p> <p>② (좌동)</p> <p>1. ~ 3. (좌동)</p> <p>4.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 ④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변경</p>	

2. 변경(예정)일 : 2019년 4월 10일(예정)